- (5)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하고, 안전인증기관(구 검정기관)의 인증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고소작업대 장비의 구조부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, 용접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고소작업대 주요 구조부 변경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대 측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공구 및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9) 고소작업대 지브·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10)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11) 아웃트리거는 충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한 조치 후에 받침판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6.2 작업 전 점검사항

- (1)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,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학인하고,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,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